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3044 취득세 및 재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달성군수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가. 토지 소유권의 취득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달성군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5. 3. 30. D, E, F과 함께 금영정공 주식회사로부터 G산업단지 내의 대구 달성군 H 공장용지 11431.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각 구분하여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아직 분필되지 않은 이유로 각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의 11431.1분의 34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부분 3463.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인	D	E	F	원고
면적(㎡)	3555.9	2496.2	1915.1	3463.9
매매대금(원)	1,449,000,000	1,012,000,000	647,000,000	1,180,000,000

3)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512㎡(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있었는데, D은 금영정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555.9㎡ 외에 그 지상에 신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기존 공장을 대금 57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1431.1분의 3555.9 지분 및 이 사건 기존 공장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공장 680㎡와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1. 25. 이 사건 공장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1. 28. D, E, F과 사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취득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C로 이기하고, 2016. 4. 26. 이 사건 토지 중 D, E, F 소유로 남아있는 지분에 관하여 2016. 2. 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1) 한편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1,1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47,200,000원, 지방교육세 4,720,000원, 농어촌특별세 2,360,000원의 합계 54,280,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하고, 2015. 9. 25. 2015년 1기분 재산세 1,581,110원을 납부(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에 대하여 1,025,4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같은 조 제8항, 구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6. 7. 11. 대구광역시 조례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의2 제1호를 적용하여 경감한 취득세 7,178,020원, 지방교육세 410,170원, 농어촌특별세 4,819,520원의 합계 12,407,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원고는 산업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같은 조 제8항 및 이 사건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산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54,280,000원 중 33,630,000원, 이 사건 재산세 1,581,110원 중 1,185,833원을 감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나.목의 일반산업단지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위 법률의 해석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를 나대지 상태의 산업단지를 최초 분양받은 자에 한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12호로 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는 것을 공장설립 완료신고시로부터 5년간 제한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토지의 최초 수분양 및 취득자에 한정하지 않으면 승계 취득이 거듭될 때마다 지방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고, 일반 납세자와 사이에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를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이 된 후 금영정공 주식회사에게 분양되었고, 금영정공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이 사건 기존 공장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공장의 취득에 관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기존 공장이 신축되어 있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위 조항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들고 있고, 제2호 가.목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같은 호 다.목에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35를 경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5조의 2 제1호는 2016. 12. 31.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제8항, 이 사건 조례 제5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각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다.목은 지방세 감경 대상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가.목, 다.목에서의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그 취득 당시부터 나대지만에 한정된다거나, '취득'의 경우 최초 분양만에 한정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어 국가산업의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러하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원고는 공장 등의 신축을 위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실제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이 사건 기존 공장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아직 분필되지 않은 이유로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승계취득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방세 감면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사용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부당하게 거듭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또한 구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의 산업용지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1]), 금영정공주식회사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경받을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1) 이 판결은 산업집적법이 제정되기 전의 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대한 것이나, 해당 규정과 현행 구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1호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별지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6. 7. 11. 대구광역시 조례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추가 경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